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周邊環境研究

美·日安保協力關係의 發展과 韓國安保에 미치는 影響

研究執筆責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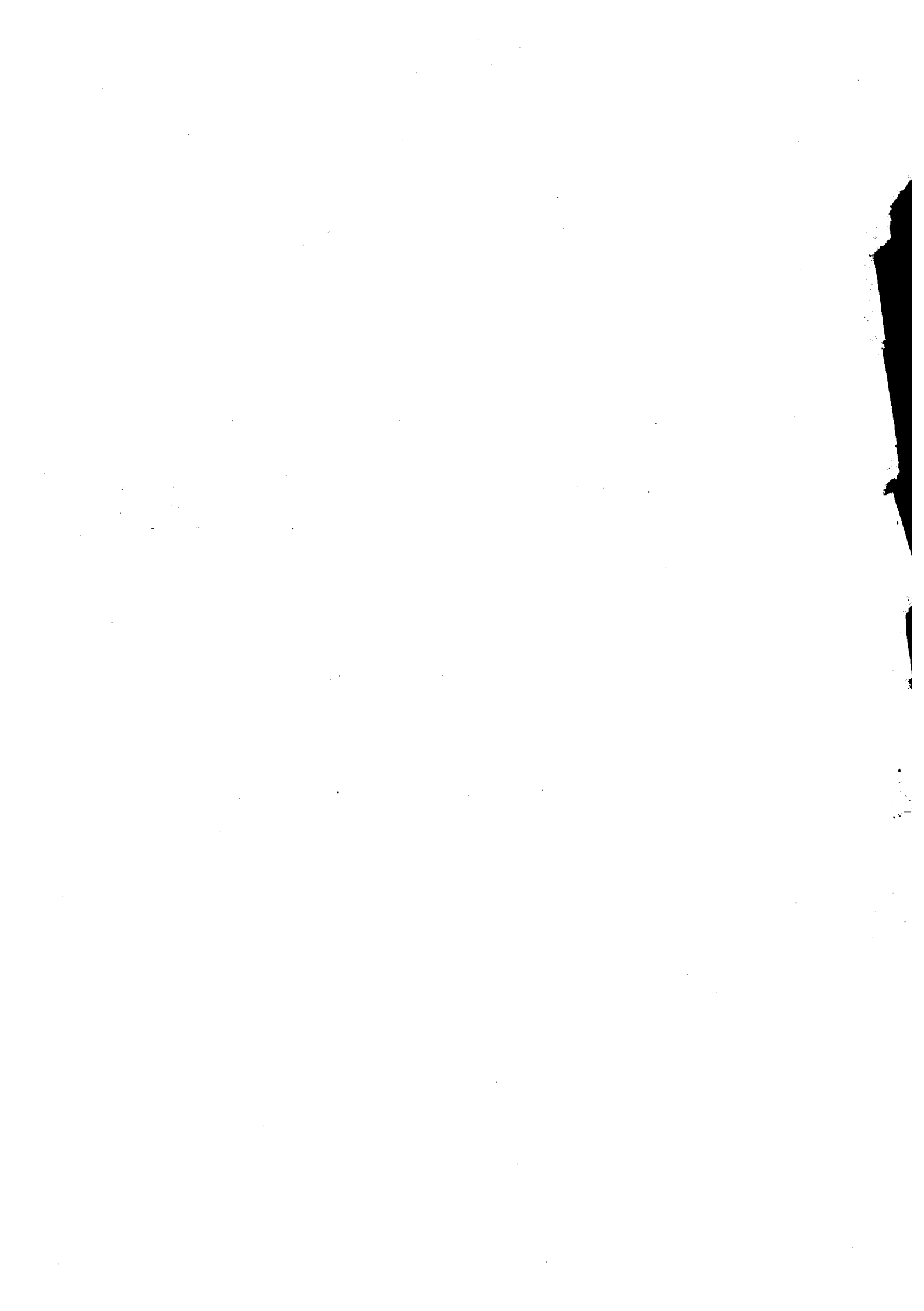


萬 (外國語大學校)

刊行責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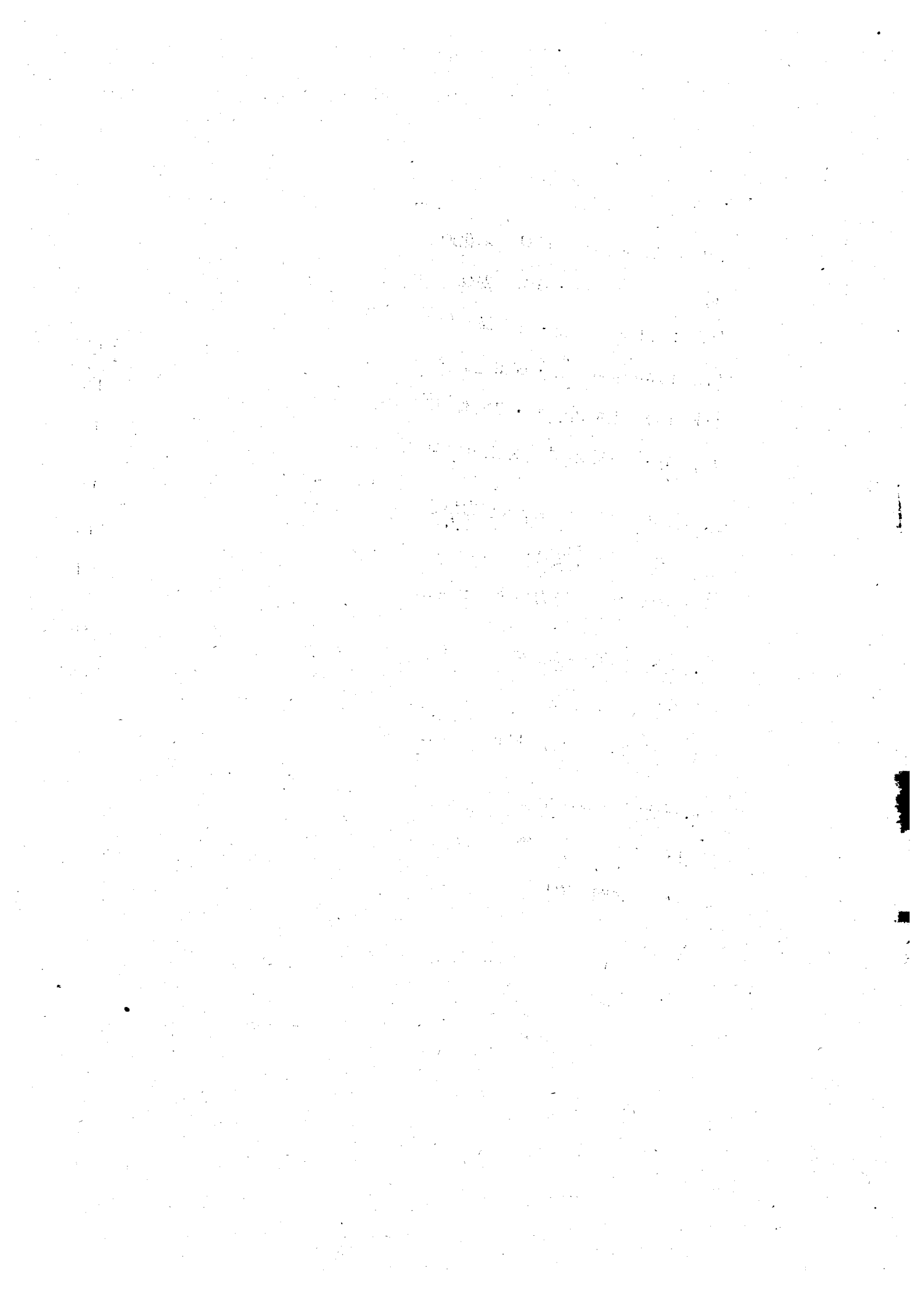
圭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一. 序 論.....	3
二. 美·日安保協力關係의 變化過程.....	5
(1) 美軍政과 美·日의 安保協力關係.....	5
(2) 1951年의 美·日安保條約과 兩國의 協力關係.....	8
(3) 1960年의 美·日相互協力 및 安保에 關한 條約.....	11
(4) 1970年대의 美·日安保協力關係.....	13
(5) 美·日安保協力關係上的의 問題點.....	16
三. 日本의 安保觀과 軍事力增強.....	18
(1) 日本의 安保觀.....	18
(2) 日本의 防衛力增強 展望.....	21
四. 美·日安保協力關係의 變化와 우리의 安保.....	30
(1) 軍事的 局面.....	30
(2) 經濟·外交的 局面.....	36
五. 우리의 対応策.....	40
(1) 軍事的 対応策.....	41
(2) 外交的 対応策.....	42



一. 序 論

第二次 世界大戰의 終結以來, 日本은 美國의 軍事的 保護속에서 現在와 같은 政治的 安定과 驚異的인 經濟的 發展을 이룩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美·日間의 安保協力關係를 면밀히 考察해 볼 때 1960年代 初期까지의 이들의 關係는 그 以後 오늘에 이르는 過程 속에서 크게 變質되고 있음이 發見된다. 即. 美·蘇에 의하여 國際情勢가 兩極化되고 뒤이어 韓國動亂이 勃發함에 따라 美國이 아시아에서의 對共產封鎖政策을 展開하던 1950年代의 日本에 軍事的 役割이란 極小화된 狀態에 있었다.

日本은 美國의 對아시아 防衛를 위한 軍事戰略的 拠点의 位置에 머물 程度의 消極的인 役割만을 担当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1960年代에 들어서 中·蘇協力關係가 葛藤關係로 轉換되고 中共의 勢力이 浮上되면서 國際情勢가 多極化됨에 따라서 美國의 對아시아 戰略上에 새로운 變化가 나타났다.

中·蘇紛爭을 지렛대로 하여 長期화된 越南戰爭을 終熄시키고자 하는 努力과 더불어 美國은 一面은 對共產勢力鬪爭이라는 從來의 戰略을 서서히 修正, 蘇聯 그리고 中共과의 대타트를 추구하면서 他面 아시아에서의 美軍基地를 弱화시키는 段階에 突入하게 된 것

이다. 여기에 日本은 美国의 一方的인 軍事的 保護를 받는 位置로부터 美国과의 同半者的 位置로,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에 연결된 美国의 既存役割의 一部를 担当해야 될 立場에까지 서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國際情勢의 變動에 따른 美·日安保關係의 性格變化는 우리나라의 安保面에도 重大한 影響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美国에 의하여 構築되었던 韓半島에서의 勢力均衡이 美·日安保關係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持續될 수 있느냐 하는 問題가 대두된다. 더욱 積極的으로는 駐韓美地上軍의 撤収에 따른 狀況變動이 日本으로 하여금 어느 程度로 우리의 安保를 위한 安定者的 役割을 担当할 수 있게 될 것인가의 問題가 대두된다.

本 研究에서는 첫째로 美·日의 安保協力關係가 第二次大戦以後 어떠한 段階를 거쳐서 變遷되어 왔나를 具體적으로 分析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둘째로 이에 따라서 日本의 既存安保觀은 어떻게 變化되고 있는가를 分析해 보고자 한다. 셋째로 이와같은 狀況變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을 考察해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方向의 安保對策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政策代案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二. 美·日安保協力關係의 變化過程

美國과 日本의 關係는 1853年 美國의 페리제독이 半強制的으로 日本을 國際舞臺에 登場시킨 時節에서 부터 始作된다. 그러나 그들간의 本格的인 關係設定은 1945年 美國에 의하여 日本이 占領된 때부터 이루어진다. 바로 二次大戰中에는 美國이 日本의 敵對國이었다. 그러나 戰後 日本이 外部로 부터의 軍事的 危脅을 받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迅速하게 經濟發展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美國의 絶對的인 保護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이 곧 美·日安保協力關係로서 說明될 수 있는 바, 本稿에서는 美軍政時節, 1951年의 美·日安保條約에 의거한 1950年代, 1960年의 美·日安保條約에 의거한 1960年代, 그리고 격동하는 70年代를 나누어 美·日安保協力關係의 性格이 어떻게 變化되어 왔나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美軍政과 美·日의 安保協力關係

美國이 日本을 占領하여 統治하던 初期에는 分明히 敗戰國으로서의 日本을 非友好敵對國의 立場에서 다루려는 努力이 強하게 나타났다. 맥아더將軍은 同盟軍總사령官 (SCAP)으로서 日本으로 하

여금 어떠한 狀況에서도 戰爭能力을 갖출 수 없도록 하는데 總力을 기울였고 結果로 나타난 것이 有名한 日本憲法 第9條라고 할 것이다. 그 內容을 보면 첫째로 日本國民은 永久히 戰爭權을 行使할 수 없으며 國際紛爭의 解決手段으로서 軍事力의 行使 혹은 危脅을 加할 수 없도록 하였다. 둘째로 위의 目的을 위한 陸·海·空軍을 包含한 어떠한 戰爭手段도 日本은 保有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1950年 蘇聯에 의한 訓練된 北傀軍이 南侵을 行함에 따라서 日本에 基地를 두었던 美 海·空軍이 즉각 韓國을 支援하게 되었고, U. N. 安全保障理事會의 비준에 따라서 美陸軍마저도 韓國으로 出動하기에 이르렀다. 結果로 美軍이 없는 日本의 治安을 위하여 맥아더將軍은 當時의 요시다首相으로 하여금 日本警衛隊(75,000名으로 構成)를 設置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急激한 狀況變動 속에서 日本은 一面 自體의 治安을 担当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他面에는 U. N軍에게 韓國戰을 위한 基地를 提供해 줌으로써 間接적으로 戰爭에 介入하는 結果를 초래하였다. 또한 韓國戰을 계기로 하여 戰爭物資 및 生産用役이 日本으로부터 調達됨으로써 日本의 經濟는 急成長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

었다.

日本이 極東亞細亞에서의 共產勢力을 沮止하는데 있어서 戰略的으로 重要한 拠点으로서 부각됨에 따라서 美國은 종래의 非友好敵對國이라는 固定概念을 變更시키고 日本을 同盟國으로 보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日本을 獨立國으로 昇格시키는 一方, 美軍은 繼續 日本에 殘留함으로써 日本의 安保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極東의 安保를 強化하고자 하는 새로운 公式이 나타난 것이다.

그것이 곧 1951年의 日本平和條約締結(美國을 包含한 48個國의 조인에 의하여 이루어짐)이었고 日本의 獨立國으로서의 自主性이 國際적으로 認定되었다. 平和條約의 主要內容을 要約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첫째로, 日本은 韓國·대만·사하린 및 유구열도 등에 대한 所有權을 포기한다. 둘째로, 日本은 日本에 의해 占有되었던 太平洋島嶼에 대하여 美國이 U.N.의 戰略的 統治權을 代行할 수 있도록 認定한다. 셋째로, 日本은 오키나와 및 오가사와라(Bonin) 島嶼 등에 대하여 美國이 行政管理權을 가질 수 있도록 U.N.에 提示하는 어떠한 要請에도 응하도록 한다. 넷째로, 同盟國들은 日本의 主權國家임을 認定하고 U.N.憲章51條에 의거하여 日本이 自体防衛를 할 수 있는 同時에 集團安保體制에 自律的

으로 参与할 수 있음을 認定한다. 다섯째로 日本은 戦争賠償金を 同盟国에 支払해야 하되, 日本의 經濟가 回復되는 狀況을 참작하도록 한다.

平和条約을 통하여 美国은 오키나와를 管理하고 日本에 基地를 確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며, 日本에 최소한의 再武装 餘地를 주었고, 融通性있는 賠償責任을 부여한 것이다. 이로써 美国은 日本을 共產主義에 對抗할 수 있는 拠点으로서 確保한 것이다. 平和条約의 뒤를 이어 締結된 美·日安保条約에 의하여 美日間の 軍事的 協力關係는 그 範圍와 内容面에서 具体化되기에 이르렀다.

(2) 1951年の 美·日安保条約과 兩國의 協力關係

1951년에 締結된 美·日安保条約은 性格上 美·日關係를 敵對關係로부터 同盟關係로 轉換시키는 意味를 갖는다. 韓國戦争이 繼續되는 가운데 日本은 美国으로 하여금 계속 美軍을 日本 및 周圍에 配置함으로써 日本의 安全을 保障해 줄 것을 要請한 것이었고 美国은 日本이 스스로 防衛를 目的으로 한 軍事力을 強化할 것이라는 것을 前提로 하여 日本에 美軍을 주둔시키겠다는 결의를 表

명한 것이었다. 安保條約의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2)

첫째로, 日本은 美軍이 주둔할 수 있도록 基地를 提供한다.

둘째로, 日本의 自體의 防衛力을 增強시킨다. (日本憲法 9 條는 오직 日本의 공격을 주로하는 戰爭行爲와 이에 必要한 軍備의 增強을 禁하는 規定일 뿐, 防衛를 目的으로 한 軍備增強은 이에 규제되지 않는다고 해석됨.) 3)

셋째로, 日本주둔의 美軍은 日本自體의 防衛를 保障할 뿐만 아니라 極東에서의 國際的 平和와 安全을 保障하는데 使用될 수 있다. 따라서 日本의 美軍基地는 韓國·台灣 및 中共에 대한 美國의 어떠한 政策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利用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로, 美軍은 日本政府의 要請에 따라서 外部의 壓力에 의해 야기된 日本內의 巨大한 폭동 및 소요를 진압하는데 協調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美國은 日本의 國內事情에 軍事的 介入을 할 수 있는 잠정적 權限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다섯째로 日本은 美國의 承認없이 는 第三國에게 軍事基地를 提供 하는 것이 禁止된다. 한편 美國은 오키나와 및 太平洋群島를 戰略的 領土로서 確保한다.

위와같은 內容의 美·日安保條約은 具體적으로 1952年 4月부터

効力을 가지게 되었으며 日本은 政治的으로 美軍政을 벗어나 獨立
國이 되었던 것이다. 同年 8月에 日本警衛隊는 日本自衛隊로 名
稱이 바뀌면서 서서히 軍事力을 增強시키게 되었고 美國은 日本의
安全을 위한 軍事的 保護者가 되었다.

그러나 日本政府는 独立的으로 國內政治過程을 運用하면서부터 以
上의 條約關係에 대한 強力한 挑戰과 批判을 받게 된다. 우선
美·日安保條約은 日本의 內政까지도 美軍이 관여하게 만든 日本의
獨立性을 철저히 封鎖하는 條約이라는 것이며, 日本의 安保는
美軍이 自意로 日本基地를 外部戰爭에 利用하는 境遇 더욱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며, 日本自衛隊의 設置와 增強은 憲法9條에 反하는
것이라는 論爭이 強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더하여 日本內의
美軍基地가 社会的으로 誘發한 심각한 問題들(例: 混血兒, 強姦, 殺
人 및 暗去來 등)은 結局 美地上軍의 撤収問題를 가져왔던 것이
다. 따라서 1958年과 1960年 사이에 日本政府는 美國이 日本의
安全을 保障하는 一方, 美·日關係가 보다 平衡의 關係로 轉換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交渉을 強力히 推進하였다. 結果로서 1960
年에 既存安保條約을 修正한 “美·日相互協力 및 安保에 관한 條
約”이 締結되었다.

(3) 1960年의 美·日相互協力 및 安保에 관한 條約

1960年의 安保條約에 따라 修正된 가장 重要한 事項은 대체로 3가지로 要約된다. 4) 첫째로 美國이 日本内の 美軍基地를 外國에 대한 軍事的 目的으로 使用할 때, 그리고 核武器를 日本内に 들여 올때는 日本政府와의 事前協議를 거치도록 한다. 둘째로, 美軍으로부터 日本内の 폭동을 제압할 수 있는 權利를 박탈한다.

셋째로, 同 條約은 發効後 10年이 經過하면 美·日가운데 一方이 1年의 경고와 함께 그 効力을 終熄시킬 수 있다. 이와같은 새로운 規定은 美·日協力體制에 있어서의 重要한 意味를 갖는 것이므로 詳說을 要한다.

첫째의 “日本政府와의 事前協議”란 과연 얼마나 拘束力이 있는 規定인가 하는 問題이다. 勿論 美國이 자의적으로 日本基地를 使用할 수 있도록 했던 1951年의 條約보다는 進一步했음이 分明하나 表現의 애매성 때문에 日本内の 社会党을 中心으로 한 反對派들은 이를 크게 問題삼아 조약비준의 거부에 앞장선 바 있다.

條約이 締結된 後에도 1965年에 日本의 与野는 同問題를 가지고 크게 論亂을 벌였던 것이다. 5) 그러나 表現의 애매성에도 불구하고 同規定을 통하여 日本은 美國의 對極東政策遂行에 크게 圧

力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排除할 수 없다. 例로서 美国이 日本領土内(오키나와 包含)에 核武器를 設置하고자 해도 日本政府는 輿論의 压力에 의해 이를 拒否할 可能性이 크다. 또한 韓半島에서 戰爭이 발발하는 경우에도 美国이 恣意로 日本基地를 使用할 수 없는 可能性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둘째로 日本内亂에 대한 美軍不介入에 관한 事項은 美軍이 日本内政을 武力的으로 干涉할 수 있는 可能性을 排除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로서 日本은 行動의 独自性を 더욱 確保하게 되었고 同時에 日本自衛隊의 独自の인 強化를 꾀할 수 있는 餘地를 만들어 놓게 된 것이다. 美·日의 安保協力關係는 对等의 關係의 方向으로 進前하게 된 것이다.

셋째로, 同條約이 10年후(1970年 6月을 意味)一方의 意思에 따라 廢棄될 수 있다는 것은 美·日兩者間에 1970年의 危機를 越감하도록 하였다. 雙方이 合意하지 않는 가운데 一方의 意思에 따라 廢棄되는 境遇가 생긴다면 이는 곧 美·日間의 安保上の 別離를 意味하는 것이겠고, 설혹 雙方이 條約의 연장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日本内の 輿論이 이를 強力하게 反對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混亂이 조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特히 後者の 可能性은 排除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一般의 우려와는 달리 사토政府는

技術的으로 이 問題를 處理함으로써 (例: 1970 年の 'Expo 70' 은 國民들의 關心方向을 政治로부터 떠나게 함), 同條約은 美·日의 合意下에 現今까지도 存続하고 있다.

(4) 1970 年代의 美·日安保協力關係

1969 年に 中·蘇間の 国境紛争이 深化되면서 美国의 对中共觀이 敵對關係를 지양하는 方向으로 進前되고 이와같은 國際与件의 變化를 越南戰爭의 終結手段으로 利用하고자 하는 美国의 努力이 加速化됨에 따라서 1970 年代의 國際情勢는 急變하게 된다. 이는 美·日關係에도 크게 影響을 미치게 된다.

우선 1969 年 7 月に 있었던 檀島에서 發表된 닉슨독트린은 一面 美国이 「아시아 國家」로서 계속 存在하되, 他面은 日本으로 하여금 美国의 아시아 防衛努力의 一部를 分担하도록 촉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⁶⁾ 이렇게 함으로써 美国은 防衛負擔을 줄이는 同時에 对共產圈接觸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二重目的을 達成하고자 한 것이다. 그 後 美·日關係는 1960 年の 安保條約을 준수한다는 原則下에 現今까지 六次에 걸친 兩國 수뇌에 의한 共同聲明을 通하여 相互關係를 定立해 왔다. 그 內容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7)

닉슨독트린 發表 後 1969年 11月에 닉슨-사토 共同聲明이 發表되었다. 同聲明에서는 安保에 관한 限 美·日安保條約을 再確認하고, 오키나와의 早期返還을 合意했으며, 極東에서의 安保에 관한 共同事項으로서 韓國 및 自由中國의 安保가 日本의 安保에 緊要함을 闡明하였다. 第二次 닉슨-사토聲明(1972年 1月)에서는 美日安保條約의 重要性確認 및 오키나와의 返還이 具體적으로 1972年 5月 15日에 이루어질 것임을 다짐했다.

1972年 9月에 닉슨·다나카共同聲明이 發表되었고 美·日安保條約은 계속 維持되어야 한다는데 合意를 보았다. 더불어 韓半島에서의 南北對話를 支持하고 닉슨大統領의 訪中·訪蘇의 意義를 確認했다. 그 後 포드·사토聲明(1974年 11月)에서는 兩國의 友好關係를 再確認한 바 있다. 다시 1975年 8月에 포드·미끼 共同聲明에 의하여 國際社會建設을 위한 美·日協力關係를 다짐하였으며, 아시아에서의 平和가 全世界의 平和에 緊要한 要素가 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1977年 3月の 카터·후쿠다 共同聲明은 美國의 駐韓美地上軍撤収決意가 있는 後의 聲明이라는 點에서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첫째로 美·日安保條約의 確固不動한 維持가 兩國에 利益이 된다는 點에 合意했다. 둘째로 美國은 太平洋國家로서 有效적 絶한 軍隊를 계속 주둔시키겠다함을 確言했고, 日本은 이에 아시아·太平洋地域의 安全과 發展에 더욱 寄与하겠다고 다짐했다. 셋째로 日本과 東南亞全體의 安保를 위해 韓半島의 平和와 維持가 계속 重要하다고 合意하였다. 그리고 넷째로 카터는 駐韓美地上軍 撤収에 관련하여 韓國 및 日本과 充分히 協議한 後 韓半島의 平和를 沮害하지 않는 方向으로 撤軍을 進行시키겠다고 確約하였다.

以上이 1969 年부터 現今까지의 六次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美·日間의 共同聲明內容을 安保面에 留意하여 要約한 것이다. 여기에 서 찾아 볼 수 있는 重要한 特徵은 ① 美·日安保條約의 維持 ② 아시아 平和를 위한 美·日의 協力關係強化. ③ 오키나와의 日本返還 ④ 日本의 아시아安保를 위한 役割의 向上과 美國과의 友好持續 등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1970 年代의 美·日關係를 國際情勢變化의 틀속에서 考察해 보면 몇가지 새로운 問題點이 發見된다. 이를 詳述해 보기로 한다.

(5) 美·日安保協力關係上の 問題点

美軍政時節以來 美·日關係의 變化趨勢를 보면 日本의 對美依存度가 계속 弱화되면서 兩國의 關係는 漸次 協力關係로, 더 나아가서는 競爭關係로 轉換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특히 1972年대에 接近하면서 日本의 經濟는 急成長, GNP가 世界三位를 記録하게 되었고, 外交面에서도 보다 積極的인 獨立外交를 追求하게 됨에 따라서 위와같은 現象은 크게 부각된 것이다.

美國의 立場에서는 日本을 同伴者로서의 關係를 維持하는 一方, 日本의 政治經濟的 挑戰을 制壓해야 되는 問題를 안게 된 것이다. 이에 所謂 Nixon Shock라 불리우는 美國의 意圖的인 政策이 登場한 것이다.

1971年 7月 닉슨大統領은 北京에 訪問할 것임을 日本政府와 事前協議없이 밝혔다. 當時 日本은 中共과의 國交正常化를 渴望했고 오직 美國과의 關係를 考慮했기 때문에 이를 成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닉슨의 위와같은 發表는 日本政府를 당황케 했으며 日本内の 對美國不信感情을 크게 자극한 바 있다. 이를 第一의 Nixon Shock 라고 부른다. 그런데 北京訪問發表後 1個月이 겨우 經過한 뒤 이번에는 經濟的인 面에서 第二의 Nixon Shock

가 나타났다. 즉 일련의 새로운 經濟政策의 發表와 더불어 닉슨은 美國의 關稅를 10% 增加시켰던 것이다. 이는 美國市場內에서의 日本商品의 저렴성에 의한 압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써 特別히 日本의 섬유업계는 크나큰 타격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二回에 걸친 Nixon Shock는 日本으로 하여금 美·日 關係를 再評價하게 만드는 계기를 造成해 주었으며 對美不信度(經濟·外交 및 安保面에서 까지도)⁸⁾의 增加와 더불어 日本을 더욱 獨立的인 位置로 轉換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1972年 日本의 中共承認과 더불어 대만과의 外交關係斷絶, 同年의 外몽고 承認 그리고 1973年의 越盟承認 등이라 하겠으며 蘇聯과의 시베리아開發問題 協議 및 北傀와도 美國보다 훨씬 積極的으로 接觸을 試圖하고 있는 것 등이다. 이와같이 外交面에서 積極적 多邊外交를 追求하면서 經濟面에서도 對美 압도적인 貿易類型으로부터 脫皮하고자 強力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장 重要한 問題는 이와같은 激動속에서 日本은 自体安保問題를 위하여 얼마나 軍事力을 強化할 것이며 同時에 自体의 安保를 연결시켜 理解하고 있느냐가 本論文의 重要關心事라고 할 것이다.

이를 論해 보고자 한다.

三. 日本의 安保觀과 軍事力增強

國際情勢가 變化되고 美·日安保協力關係의 性格도 變化됨에 따라서 日本의 安保觀도 消極的 姿勢(完全對美依存 혹은 完全非武裝中立)로부터 보다 積極的인 姿勢, 即 美·日安保條約의 重要性을 認定하는 一方, 自體의 軍事力을 強化하고자 하는 姿勢로 바뀌고 있음이 明白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선 日本의 安保觀이 어떻게 變質되고 있는가를 考察한 後, 앞으로 日本의 自體防衛의 力量을 어떤 方向으로 增加시켜 나갈 것인가를 分析해 보기로 한다.

(1) 日本의 安保觀

傳統的으로 日本의 政府黨인 自民黨은 美·日安保條約을 日本安保를 위한 가장 중요한 支柱로서 파악하였으며 自衛隊는 自體의 安保力量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支柱로서 파악하였다. 이에 비해 社會黨과 共産黨은 일찌기 美·日安保條約에 근거한 日本內의 美軍基地는 오직 日本의 安保를 위협한다고 했고. 또한 憲法九條에 立脚해 볼 때 自衛隊는 違憲的 機關이므로 解体되어야 한다 함을

強調한 바 있다. 그러나 60年代에 들어와 兩党的 路線은 分離되어 社会党은 非武装中立을 고집하고 있으나 共産党은 武装(自衛隊認定)中立을 표방하고 있다.⁹⁾ 이에 비하여 中立路線의 諸党中 특히 第三党이라고 할 수 있는 公明党은 一面 美·日安保條約의 漸進的인 廢棄(1972年에는 即時廢棄를 주장한 바도 있음)를 주장하면서도 自衛隊의 重要性은 認定하고 있는 立場이라고 하겠다.

1976年 衆議員選舉結果 自民党은 크게 退潮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으나 新自由클럽 및 中道勢力의 強勢로 말미암아 日本의 安保觀 및 政策方向이 既存의 것에서 크게 離脱되리라고 展望되지는 않는다. 이를 國家的인 次元에서 파악해 보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窺見할 수 있다.

첫째로, 美·日安保條約의 重要性을 日本의 中立化代案과 比較하여 얼마나 더욱 가치있는 것으로 認識하고 있는나의 見解를 調査한 結果에 의하면 1959年 初에는 美·日安保條約(調査對象者의 15% 未滿이 이를 보다더 重要視함)에 비하여 中立化方案(對象者의 35%以上이 支持함)이 훨씬 가치있는 것으로 認識되고 있다. 그러나 1970年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逆現象이 일어났고 美日安保條約을 支持하는 者가 對象者의 40% 以上인데 비하여 中立化方案을 支持하는 者는 15% 程度에 不過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¹⁰⁾ 또한 산케이新聞이 調査한 1976年의 輿論은 59%가 美日安保條約을 지지하고 있다. ¹¹⁾

둘째로 自衛隊의 重要性에 관한 認識度는 보다 興味있는 趨勢를 보여주고 있음이 發見된다. 1959年을 基點으로 하여 볼 때, 自衛隊의 增強을 支持하는 쪽보다 反對하는 쪽이 越等하게 높은 比率(平均 2倍以上의 応答者가 自衛隊의 增強을 反對함)을 차지하고 있음이 1969年 初까지 계속되는 現象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닉슨 獨트린의 發表와 함께 1969年 後半期부터 自衛隊의 增強을 지지하는 率이 相對적으로 크게 높아진 가운데(例로서 1969年末의 調査에 의하면 自衛隊增強의 支持率 25%정도인데 비해 反對率은 40%미만에 머물렀음), ¹²⁾ 1976年에 이르러는 応答者의 76%가 自衛隊를 支持하고 있는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興味있는 現象은 自衛隊의 存続을 反對하는 社会党的 路線에도 불구하고 社会黨員의 51.8%가 自衛隊를 支持(28.9%가 反對)하고 있다는 事實이라고 할 것이다. ¹³⁾

위의 現象을 綜合해 보면 美国의 對極東政策이 變化되고 美軍의 日本基地利用度가 極小化되는 가운데에도 오히려 美国으로부터 軍事的 協力(例:核우산 提供)을 받고자 하는 熱望을 계속 혹은 增

加하고 있으며, 더욱 重要하게는 自衛隊存立의 正当性과 그것의 增強必要性을 갈수록 크게 認識하고 있다는 事實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日本은 어떤 方向으로 自衛力を 增強시킬 수 있는가? 이를 分析해 봄으로써 앞으로 日本이 極東에서의 軍事的 勢力均衡에 얼마나 貢獻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2) 日本의 防衛力增強 展望

① 日本防衛態勢의 現況

日本의 境遇, GNP에 대한 防衛費負擔은 계속 1% 未滿에 머무는 狀態에 있어왔다. 이는 最近 軍事力を 強化하고 있는 狀況에서도 同一하게 나타나며 1975年の 44억 8천만불, 1976年の 50억 불 및 1977年の 56억 불의 國防費策定은 모두 GNP의 0.9% 未滿에 不過한 額數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5年の 國防費를 다른 나라와 比較해 보면 그 額이 世界的 10位에 達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¹⁴⁾ 비록 國防費負擔率은 낮은 水準에 있다고 하나, 日本과 같이 빠른 速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고 있는 나라로서는 앞으로 同一한 率의 國防費를 維持한다고 해도 國防費의 絶對額數는 계속 括目할 만큼 增加되리라는 事實을

看過할 수 없다.

武器의 現代化와 關聯하여 팔목할만한 것은 武器의 80% 程度가 日本 스스로에 의해서 生産된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는 經費面에서 外國으로부터 武器를 輸入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費用이 소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는 하겠으나 앞으로 日本이 危機에 如한 境遇 보다 迅速하게 自体力量을 開發할 수 있다는 點에 그 意味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問題는 經濟強國인 日本이 美·蘇에 比較할 수도 없을 程度로 빈약한 재래식 무기만을 保有하고 있으며 隣接國家인 中共에도 전혀 미칠 수 없는 軍事力을 保有하고 있다는 事實에서 發見된다. 과연 日本은 앞으로 軍事力을 增強하는 경우 現在의 消極的 趨移만을 계속 견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可能性을 찾을 것인가가 問題가 된다. 그리고 後者의 경우에 봉착하는 경우에는 어떤 形態의 軍事力增強을 試圖할 것인가가 問題로 된다. 이를 자세히 檢討해 보기로 하자.

② 日本防衛力 增強의 展望

日本의 軍事戰略面에서 扱할 수 있는 代案은 대략 네가지로 分類된다. 첫째는 左翼系列이 主張해 왔던 바와 같이 美國과의

安保條約關係를 끊어 버리고 完全 非武装中立의 길을 扞하는 方法이다. 그러나 이미 考察해 본 바와 같이 이는 實現性이 전혀 없는 代案이라고 하겠거니와 本稿의 分析對象에서 除外하기로 한다.

둘째는 現狀維持方法으로서 現在와 같이 防衛費를 最小化하면서 美國과의 安保條約에 依存한 채 오직 經濟發展을 追求하는 方法이다.

셋째는 自衛力을 상당한 程度로 強化하는 方法으로서 美國과의 同盟을 維持한 채, 仏蘭西나 英國水準의 軍事力을 가지고 極東에서 影響力을 行使하는 方法이라고 하겠다.

넷째는 重武装中立의 日本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核武器를 包含한 各種戰略武器를 開發하고 軍事的 超強의 位置에 接近하는 方法을 意味한다. 이 경우 美國과의 軍事的 同盟이란 큰 意味를 갖지 못할 것이다.

위의 代案 가운데 첫째의 경우를 除外한 3 가지 方案에 대하여는 檢討를 要한다. 그런데 最近 軍事戰略家이며 RAND Corporation의 會長을 역임한 바 있는 Rowen博士가 이 問題를 美國의 立場에서 明確하게 分析한 바 있다.¹⁵⁾ 그의 見解에 立脚하여 위의 問題를 다루고자 한다.

가. 第一代案 : 現政策의 固守

이는 現在와 같이 經濟發展을 우선으로 하고 軍事力의 增強은 그 副産物로서 漸進的으로 擴大되는 경우를 意味한다. 이러한 政策을 따르게 되면 經濟成長率을 5%로 하고 國防費를 GNP의 1%로 볼 때 1986년에는 약 100억 불 (1976年 달러로 換算)의 國防費가 支出될 것이며, 陸軍·空軍에 必要한 裝備 및 잠수함 등을 상당한 水準으로 確保함으로써 制限된 防衛業務는 遂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程度의 國防費를 가지고서는 소위 軍事的 強大國의 範疇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自明한 일일 것이나 自体防衛를 위한 最小限의 면모는 갖추게 된다는 判斷이 따른다.

日本政府의 既存立場을 考慮해 본다면 이와같은 政策의 구현이 바람직한 方向으로서 予測되어지며 우리나라와의 軍事的 面에서의 協力이 必要로 될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한다.

나. 第二代案 : 自衛力의 強化

自衛力의 強化라 함은 GNP에 대한 軍事費負擔率을 높이는 것을 意味한다고 하겠다. 즉 Rowen의 論理에 따르면 앞으로 10年 以内に NATO 諸國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軍事費가 GNP의

3~4%에 육박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¹⁶⁾ 이는 第一代案에서 추정했던 國防費의 3~4 배를 意味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方案을 追求하는 경우⁹ 日本은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상당한 水準의 軍事力을 保有하게 될 것이고 中·蘇間의 均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日本의 軍事能力은 防衛指向性을 이미 떠나서 공격지향의 諸武器, 例를 들어 遠距離요격에 必要한 군함, 비행기, 戰術미사일 등을 保有하게 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Rowen의 見解에 따르면 自衛力強化는 美国과 日本의 利益에 모두 合당한 조치일 것이라고 본다. 美国의 경우, 日本이 軍事力을 強化함으로써 一面 美国의 对亞細亞防衛負擔을 輕減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他面 日本이 보다 積極的인 友邦으로서 軍事的外交的인 次元에서 美国과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蘇聯을 견제하는 면에서 美国은 美·日·中同盟關係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日本의 立場에 있어서도 不確實한 環境變化에 対応한다는 뜻에서 自衛力強化는 바람직한 것이며 (70年代 美日關係의 迅速한 變化를 考慮해 보면 이와같은 假設에는 妥当성이 있음), 日本이 國際적으로 戰爭沮止力을 行使할 수 있는 機會가 주어진다

点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한다. 勿論 日本의 自衛力強化가 周边諸国 特히 中共에 주는 心理的 危脅이라든지 美国과의 安保協力 關係의 性格規定上的 混亂이 야기될 可能性¹⁷⁾ 등의 問題를 排除할 수 없으나 1980年代를 展望하는 角度에서 보면 이와같은 戰略은 不可避하게 要求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 第三代案：重武装·中立 日本

重武装·中立이라 함은 日本이 核武器를 包含한 各種戰略武器를 保有하면서 外交的으로는 美国圈을 벗어나 独立的인 位直를 確保하면서 美·蘇어디에도 偏重하지 않는 中立路線을 扞하는 경우를 意味한다. 이와같은 方案은 日本이 經濟的 大國이면서도 이를 保護할 수 있는 軍事的 裝置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点, 第二次大戰이 30年前에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美国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点 등의 現實的 矛盾을 解決해 주는 重要한 觀건이 될 수 있는 것이라 評價할 수도 있다. 特히 이와같은 論理가 正当化될 수 있는 与件은 첫째로 國際環境의 急激한 變化에 의하여 日本이 重大한 危脅을 받게되는 경우, 둘째 日本自体内에 傳統的 国守論者들이 政權을 잡는 경우 등을 추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代案속에는 現實化를 不可能하도록 만드는 諸要

인이 잠재하고 있음을 Rowen은指摘하고 있다. 첫째로 地政学
의으로 볼 때 日本은 強大國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條件을 결
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核武器를 製造한다고 해도 우선 核工場이
敵에게 容易하게 공격목표로 될 수 있고, 核武器를 저장할 場所
마저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바다를 利用하는 경
우에, 즉 핵잠수함을 구축하는 경우에도 蘇聯의 핵공격용 잠수함의
危脅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日本의 經濟力量을 考慮해 볼 때 가공할만한 核武器를 製
造할 수 있는 能力은 充分히 保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日
本國內輿論 및 反政治勢力은 重武裝을 強力히 反對할 것이기 때문
에 누가 政權을 잡는다고 해도 용이하게 核武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日本國內의 平和主義勢力이 第二次大戦의 反動으로서 크게
부각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라고 하겠다. 18)

셋째로 위의 事實에 더하여 日本이 核武器를 包含한 重武裝을
試圖하는 경우 소위 強大國들이 이를 強力히 反對할 것이며 特別히
美國이 이를 容認하지 않으려 할 可能性이 크다.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日本의 軍事力水準이 높아질수록 불가피하게 美·日關係
는 모든 面에서의 競争關係로 變할 것이며 日本은 既存의 對美

軍事依存으로부터 獨立, 더 나아가서는 中立의 方向으로 變化되면서 오히려 戰略적인 面에서 美國을 危脅할 수 있기 때문이다.

結論적으로 日本이 重武裝을 할 수 있는 경우란 自意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급작스러운 國際狀況의 變動에 따라 나타나는 結果的 現象으로서 파악될 수 있을 뿐이다.

라. 小結論

日本防衛力の 增強에 관한 3가지 代案을 檢討해 본 結果 重武裝·中立 혹은 非武裝中立이라는 極端的인 경우는 國際勢力의 急激한 變化 혹은 左翼에 의한 政權交替 등의 異變이 일어나기 前에는 可能性이 없는 것으로 判斷된다. 第一代案이라 부를 수 있는 現政策의 固守는 日本政府의 性格이 變化되지 않고 美·日關係가 現狀固着的인 경우에 可能한 것으로 判斷된다. 即, 短期的인 次元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方案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長期的 展望의 觀點에서 볼 때에는 第二代案인 自衛力の 強化라는 政策이 가장 바람직하게 나타날 것으로 推測된다. 이는 前述한 바와같이 美國의 對極東政策의 方向에 부합되는 것일뿐만 아니라 經濟大國인 日本이 最少限의 自己保存과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國際關係의 急變狀況에도 對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自衛力의 增強이라는 未來的 趨勢를 상정해 놓고 볼 때 그것이 韓半島, 좁게는 韓國에 미칠 수 있는 影響은 어떤 것인가를 予診해 볼 必要가 있다. 予診의 結果에 따라서 우리나라대로의 短期的, 나아가서는 長期的 對策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四. 美·日安保協力關係의 變化와 우리의 安保

美·日間の 安保協力關係의 變化는 美國의 一方的인 對極東政策의 變化에 따른 結果로서 보는 것보다는 美·日間の 雙方的 交互작용 속에서 나타난 現象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을 分析을 通하여 發見했다. 이와같은 狀況變動은 具體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影響을 주게 되는가? 이를 軍事的 및 外交的 局面에서 考察해 보기로 한다.

(1) 軍事的 局面

美·日安保協約關係의 性格變化는 곧 韓·美安保協力關係의 變化와 直結된 現象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日本과 韓國은 共히 極東에 位置하고 있으며 美國의 軍事的 保護속에서 成長해 왔던 것이다. 다만 美國의 立場에서 우리보다는 日本에 防衛의 力點을 두어 왔음이 事實이라고 하겠다.

駐韓美地上軍의 撤収와 더불어 日本은 美國이 負擔하였던 韓國安保任務의 一部를 代身하여 負擔할 수 있을까? 이와같은 質問은

우리의 立場에서는 美國의 關与度가 적어지는데 비례하여 더욱 重要한 質問으로 부각되는 反面, 日本의 立場에서 더욱 負擔이 加重되는 質問이라고 하겠다. 이 問題를 分析해 보기 위하여 우선 美·日安保條約上에 나타난 韓國에 관한 條約內容을 파악해 보고 日本政府의 立場은 어떻게 變化되어 왔나를 밝힌 後에, 日本輿論의 方向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이미 詳說한 바와같이 美·日安保條約에서 韓國의 安保問題는 다루어지고 있다. 1951年의 安保條約에서는 日本주둔의 美軍을 韓國 등의 極東政策을 遂行하는데 있어서 何時라도 使用될 수 있는 것으로 規定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이 美國一方의 決定에 의한 日本內 美軍基地의 使用은 1960年 安保條約에 의거하여 制約을 받게 되었다. 즉 美國이 日本內 美軍基地를 外國에 대한 軍事的 目的으로 使用할 때는 日本政府와의 事前協議를 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規定함으로써 美國恣意의 決定事項이 아님을 分明히 한 것이다. 이로 因하여 日本이 韓國의 安保를 日本의 것과 어느 程度 重要하게 연결시켜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關心事로서 登場하게 된 것이다. 美國의 決定에 따라 모든 問題는 解決될 수도 있다는 事實에 制約이 온 것이다.

둘째로 이에 日本政府가 日本의 安保問題를 韓國의 安保와 얼마
나 연결하여 파악하느냐 하는 問題가 대두된다. 1960年 美·日
安保條約이 締結된 이후, 日本政府的 態度에는 상당한 變化가 있
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1962年에 日本防衛庁이 만들었던
韓日軍事協力案은 日本政府的 公式見解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括目
할만 하다. 이는 미쓰야 研究로서 불리어지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
은 積極的인 內容이 담겨져 있다. ① 日本은 美極東戰略의 一部
이며 美軍作戰을 위한 基地役割을 할 것이다. ② 日本防衛隊는
美軍, 韓國軍, 대만軍과 合同으로 訓練을 받는다. ③ 韓國의 危機
가 再發하는 경우 自衛隊는 中國大陸의 東海岸封鎖助力과 日本뿐만
아니라 韓國과 만주에서 예비군으로 行動하면서 攻勢를 支援하는
등의 防衛義務를 遂行한다. ④ 非常時 모든 行動은 總動員態勢의
基礎로서 취한다. 産業·通信·公報미디어·輸送·民間과 物質의 割
當·物価를 包含하는 모든 經濟活動을 規制하는 必要한 機關과 銀
行·財政機關도 設立한다. 19)

勿論 위와같은 內容은 輿論의 強力한 反발에 부딪쳐 公式化될
수 없었지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當時의 日本政府를 支
配하고 있던 韓·日安保密着에 관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그후

1969년에는 닉슨-사토声明에서 韓國의 安保가 日本의 安保에 緊要하다 함을 闡명한 바 있다.

그러나 韓·日安保에 관한 声明內容은 계속 修正되었고 급기야 1977年の 카터-후쿠다声明에서는 日本의 安保를 위하여는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의 維持가 계속 重要하다고 表現되고 있다. 즉 韓國이 韓半島로 바뀌었고, 緊要가 重要로 바뀐 것이다. 換言해서 이는 日本内の 韓日安保癒着에 대한 強力한 反對輿論이 비등함과 同時에 나타난 結果로서 理解될 수 있는 것으로, 韓國을 韓半島로 表現함으로써 韓·日癒着의 印象을 除去하였고 緊要하다는 表現을 重要하다고 함으로써 日本安保에 韓國安保가 절대적인 前提가 되지 않음을 示唆한 것이라고 判斷된다.²⁰⁾ 또한 이와같은 解析을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서 우리側에서 提示했던 韓·美·日安保 協議体案이 日本政府에 의하여 拒否되었던 事實에서도 兪見된다.²¹⁾

駐韓美軍撤収와 關聯하여 日本政府는 一面 極東에서의 安保問題에 우려를 表明하면서도 撤軍問題는 「 어디까지나 美國과 韓國間의 問題이며 日本으로서는 介入할 立場이 아니다. 」라고 후쿠다首相은 公言하여 왔다.²²⁾ 이와같은 一聯의 現象은 美國이 極東에서 빠져 나갈수록, 그리고 日本이 自体의 安保負擔을 더욱 크게 느낄수록,

더욱 더 分明하게 나타나는 傾向이라고 하겠다.

셋째로 日本輿論의 重要性을 無視할 수 없다. 日本政府가 輿論의 壓力때문에 政策을 修正한 事例가 많음을 보아왔다. 輿論은 韓日安保關係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具體적으로 韓半島에 戰爭이 일어났다고 假定할 때 어느 程度 協助할 것으로 展望되는가? 이는 이미 數次의 輿論調査속에서 明白하게 드러난 바 있다.

우선 韓國을 北傀가 強占하게 된다면 日本은 어느 程度 安保上의 危脅을 받겠는가에 대한 質問에 대하여, 아주 危脅을 받는다가 應答者의 14%, 상당한 程度로 危脅을 받는다가 36%, 危脅을 거의 혹은 전혀 받지 않는다가 21%, 나머지는 무응답 (29%)으로 나타났다. ²³⁾ 應答者의 過半數가 危脅을 받게 된다고 보면서도 具體적으로 日本内の 美軍基地를 北傀가 南侵時 防禦의 目的으로 使用할 수 있도록 許容하겠는가의 質問에 대하여는 아주 強하게 反對意思를 表明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즉 日本本土内の 基地使用에 대하여는 6%가 無條件 찬성하고 10%가 制限된 範圍로 찬성하며 64%가 反對하고 있다. 오키나와 基地使用에 대한 反應도 類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위의 設問에 各各 7%, 11%, 62%로 나타남) ²⁴⁾

以上の 分析結果를 綜合해 볼 때 美·日安保協力關係의 變化는 韓·日安保關係를 오히려 더욱 分離시켜 보게하는 結果를 가져오고 있다는 判斷이 나온다. 이는 一面 美國이 積極적으로 極東安保를 担当하고 있는 限, 韓國과 日本을 同一한 安保線上에 묶어 들 수 있는 調整者의 役割을 担当할 수 있었는데 對極東戰略을 變更 시킴에 따라서 美國役割의 減小現象이 일어나고 그 부수적인 結果로서 나타난 것이라 解析할 수 있다. 他面, 日本이 自體의 安保를 韓國과 연결시키는 경우, 自體의 軍費負擔이 加重될 뿐만아 니라, 反戰輿論은 더욱 자극하게 되고, 共產勢力에 對한 軍事的 危脅을 不必要하게 받게 된다는 判斷에서 나온 結果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日本의 自衛力이 前章에서 考察한 바와같이 계속 增強되 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安保를 위한 役割이 보다 커질 것이라는 結論이 나오지 않음을 留意해야 할 必要가 있다. 北傀가 계속 中·蘇의 支持를 確保하고 있는 現實에서 이는 看過해서는 안될 重要한 問題라고 評價해야 할 것이다.

(2) 經濟·外交的 局面

1960年代에 後半에 들어서 日本의 經濟力은 世界三位를 記錄하게 되고 軍事力の 面에서도 계속 增強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왔다. 더구나 1972年 오끼나와가 日本에 반환된 이래 事實上 日本은 戰後의 對美依存體制로부터 脫皮하고 있는 狀況에 있다고 判斷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日本의 經濟·外交的 役割은 1960年代에 비하여 1970年代에 보다 積極적으로 轉換되었으며 이는 美·日安保協力關係의 進前結果로서도 判斷할 수 있다. 그렇다면 日本은 對外政策面에서 過去 美国이 亞細亞에서 担当하였던 役割을 代行할 것인가? 最近 日本이 扨하고 있는 經濟·外交路線을 檢討하여 보면 결코 樂觀的인 對答이 나올 수 없다.

첫째, 日本은 美国보다 훨씬 積極적으로 對外貿易을 擴張하고 있다. 즉 反共產諸國·中立國과는 勿論이고 蘇聯·中共·統一越南 뿐만 아니라 北傀와도 이미 活潑한 貿易關係를 이룩하고 있다. 例로서, 中共과의 貿易에 있어서 美国을 훨씬 앞질러 中共의 第一貿易對象國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對中共 輸出面에서 日本은 1976年 現在 美国의 것의 約 5倍에 達하는 輸出庫를 보여 주고 있다. ²⁵⁾ 이와같이 日本이 多邊的 對外貿易關係를 追求하고 있는 立

場에서 美国이 担当하여 왔던 既存 对 共產封鎖政策을 이어 받아 推
進하리라고 볼 수 없다. 日本의 다나카首相이 周恩来中共首相과
發表한 共同声明에서 中共을 中国의 唯一合法政府로 承認하고 대만
과의 国交關係를 断切해 버렸던 事例도 위의 論理를 뒷받침해주는
것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둘째로, 日本의 国内政治勢力의 構造는 美国의 것과 判異하다는
事實이 앞으로 日本의 对外政策方向을 美国과 크게 다를 것으로
보게하는 重要な 根拠가 된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日本에는 이미
強力한 左翼勢力(社会党·共産党이 中心)이 常存하고 있으며, 中
道革新勢力이 最近 急上昇勢를 보여줌으로써 政策決定面에서 既存保
守內閣에 影響을 行使하고 있다. 自民党的 退潮現象은 앞으로 聯
立內閣의 可能性마저도 크게 示唆해 주고 있는 実情이다. 이와같
은 政治構造를 가지고 있는 日本이 共產勢力을 恒久的인 敵으로
看做해야 할 理由가 없다. 美国의 核保護가 허용되는 限, 日本
은 自体의 安保危脅을 느끼지 않은 채, 共產国과의 多辺外交를
과감히 추구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는 觀点を 바꾸어 볼 때,
美国으로부터 外交面에서 더욱 獨立되는 것을 意味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美国과 外交競争 乃至는 外交戰을 감행할 수 있다는 可

能性を排除하기 어렵다.

셋째로, 이미 나타나고 있는 現象이기는 하지만, 日本은 世界 經濟를 움직이는 가장 강한 나라의 하나로서 外交面에서도 이에 相應하는 位置에 서고자 하는 努力을 계속할 것이다. 日本의 外交무대가 凡世界化하면 할수록 하나의 地域이나 國家를 다른 地域과 区分하여 意圖적으로 孤立化시키려는 行爲를 먼저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의 國益에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日本의 經濟 및 外交의 方向이 위와같은 趨勢로 變化되어가는 境遇, 이것은 곧 韓半島에 대한 그들의 既存政策方向을 바꾸어 놓는 結果를 가져오게 됨이 理致上 分明한 結論이다. 우리나라와는 1965年 國交正常化를 樹立한 以來 特히 經濟面에서 括目할만한 紐帶關係를 맺어왔다. 日本으로 볼 때에 韓國은 美國 다음가는 貿易相對國이며, 우리나라의 立場에서는 日本이 貿易第一對象國이기도 하다. 韓國의 驚異적인 經濟發展이 日本과의 交互作用속에서 可能했던 것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表現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의 經濟는 日本의 經濟에 민감하게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日・北僞間에는 아직 政治的인 次元에서 國交正常化를 이룩하지 못한 狀態에 있다. 그러나 北僞와의 民間貿易은 이미 活潑히 進

行되고 있으며, 政治的인 面에서도 最近 兩者間の 相互交流가 나타나고 있음은 숨길 수 없는 事實이다. 日本은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이 신청한 「北傀대의원 그룹 代表團」은 入国을 許容함으로써 새로운 政治協商의 문을 열어 놓았다. ²⁶⁾ 北傀는 日本보다 더욱 積極的으로 対日接觸 및 国交正常化의 可能性을 타진하고 있는 立場이므로 일단 계기 (例: 美·北傀間の 平和協商)만 마련된다면 兩者間の 關係가 빠른 速度로 正常化될 수 있다고도 생각된다. 이는 中共과 蘇聯이 우리와 直接的인 接觸을 회피하고 있는 狀況속에서 進展될 展望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外交上的 重大한 問題로서 부각되는 것이라 하겠다.

五. 우리의 對應策

本稿에서는 첫째로 美·日安保協力關係의 變遷過程을 分析함에 있어서 第二次大戰後 지금까지를 四期로 나누어 考察하였다. 둘째로 이와같은 安保協力關係의 性格變化 속에서 日本自體의 安保觀과 軍事力增強의 態勢는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지를 分析하였다. 셋째로는 以上과 같은 變化가 우리의 安保와 直結시켜 볼 때 어떠한 問題點이 대두되는지를 軍事的 및 經濟·外交的 局面에서 考察한 바 있다.

結論的으로 말해서 아직도 南北分斷속에서 北과의 宿命的인 대치 관계에 있는 우리의 立場에서는 이상의 諸變化가 결코 우리에게 고무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事實임을 認識하게 된다. 換言해서 北傀를 지지하고 있는 中·蘇가 우리와의 關係를 改善하겠다는 意思表明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北侵하면 北傀를 支援하겠다는 態度만을 보이고 있는 現時點에서 우리의 友邦인 美日關係가 變化되고 그들의 對韓國關与性格이 變質되고 있는 現實은 重要的 問題點으로 登場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狀況變動에 対応하기 위한 代案이 必要하다. 여기에 우리의 安保와 直結될 수 있

는 軍事的·外交的 面에서의 몇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1) 軍事的 対応策

現在 우리가 北傀에 比하여 軍事力上的 劣勢에 있음은 各種 統計資料를 通해서 밝혀진 바이다. ²⁷⁾ 特히 空軍과 海軍面에서 두 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一次的으로 이와같은 南北間의 軍事的 不均衡狀態를 時急히 교정해야 할 것이다.

가장 重要한 案은 美地上軍이 今年부터 撤収하게 됨에 따라서 그같은 指置가 만들어 놓은 空白狀態를 어떻게 메꾸느냐에 있다. 이미 우리의 政府가 先保障 後撤収라는 原則下에 美国側과 同問題를 놓고 具體的인 協商을 벌이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몇가지 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① 美国이 核武器를 撤収할 경우, 우리는 核開發을 할 것임을 주장함으로써 美国으로 하여금 核武器를 殘留시키도록 한다. 오늘날 核武器의 重要性이 공격목적 보다는 戰爭抑止 (Deterrence) 라는 點에 있다는 事實을 認識할 때, 核武器를 保有함으로 誘發되는 긴장의 可能性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立場에서는 어떠한 形態로든 核武器의 保有가 必要한 것이다. ② 美地上軍의 撤収過程에 있어서 美第二師團의 撤収와 關聯하여 作戰指揮權移讓을 強力히 主張한다. 이와같은 主張에는 戰略

上 우리에게 不利한 面이 있음을 否定할 수 없다. 일단 作戰權을 移讓받으면 美國의 防衛責任은 減小하는 反面 우리의 防衛負擔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主張을 우리가 強하게 함으로써 協商過程에서 美國에 心理的 압박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現實的으로는 일단 有事時 地上軍에 의한 戰鬥은 우리의 能力에 限定될 公산이 큰 것이므로 作戰指揮權을 移讓받아 實質的인 能力을 배양할 絶실한 必要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 軍事戰略的인 面에서 美國으로 하여금 韓國의 安保問題를 日本의 安保와 直結시켜 다룰 수 있도록 強力히 主張한다. 韓·美·日安保共同協議體는 構成하지 못한다 해도 이에 準할 수 있는 軍事上의 合同作戰은 계속 이룩될 수 있도록 美國이 日本을 說得할 必要가 있다.

마지막으로 對日本戰略으로서 時急한 것은 日本内の 輿論을 우리에게 有利한 方向으로 轉換시키는 作業이라고 하겠다. 具體的으로 日本内の 親韓勢力으로 하여금 駐韓美軍의 撤収後 日本의 安保가 重大한 危脅을 받게 된다는 것을 輿論化할 수 있도록 계속 자극한다.

(2) 外交的 對應策

南北韓對峙狀況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傳統的 外交路線인

韓·美·日協力關係를 더욱 強化해야 하는 問題와 急變하는 國際情勢의 흐름에 부응하여 적극 多邊外交를 追求해야 하는 두가지 問題가 우리 外交上의 懸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滿足시키기 위한 몇가지 代案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는 바이다.

첫째로 對美政策으로서 ① 韓半島에서의 戰爭을 抑止함을 闡明하는 美·日·中·蘇의 四者會談을 駐韓美地上軍의 撤収期間內에 美國이 主선하도록 要求한다. ② 美·北傀 平和協定締結의 前提條件으로서 周邊四強에 의한 南北交叉承認, 南北不可侵協定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美國이 北傀에 壓力을 넣도록 要請한다. ③ 위의 措置와는 別途로 美國이 韓半島問題 解決을 위한 当事者會談을 最大限 推進시킬 것을 要請한다.

둘째로 對日政策으로서 ① 日本이 北傀의 對美接近을 위한 발판의 役割을 할 수 있는 可能性을 排除하는 方向으로 日本에 壓力을 加한다. ② 日本이 北傀와 國交樹立을 하는 경우 우리는 日本과 國交斷切을 할 것임을 미리 示唆해 둔다. 現今 日本의 經濟的·政治的 紐帶關係가 우리와 훨씬 긴밀하게 이루어진 狀態에서 日本은 우리를 포기 하면서 北傀와 國交正常化를 追求할 수 없으리라고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強硬政策을 使用함으로써

外交的 實利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对中·蘇政策으로서 ① 우리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中·蘇에 대한 批判的 發言을 避하고 있는 現政策을 계속 維持한다. ② 公式·非公式채널을 通하여 中·蘇에 계속 接近한다. 우선 經濟·文化的 交流를 增大시키는 作業에서 始作하여 終局的으로 政治的 協商을 追求할 수 있도록 雰圍氣를 造成해야 하겠다.

北傀가 最近 벌이고 있는 外交戰略은 우리의 友邦인 美·日과의 對話 및 政治協商을 通하여 우리를 外交적으로 孤立化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이와같은 戰略에 말려들어가지 않는 一方, 오히려 北傀를 孤立시킬 수 있는 積極的인 外交攻勢가 우리에게 절실히 要請된다.

註

- 1) 日本平和条約 (Japan Peace Treaty) 의 全文內容은 Edwin O. Reischauer,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PP. 363~378 参照
- 2) 1951年 美·日安保条約의 全文內容은 John M. Maki (ed.), Conflict and Tension in the Far East : Key Documents, 1894~1960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1), PP. 219~220 에 수록됨.
- 3) 이와같은 解析에 대한 論争에 관하여, Frank Langdon, Politics in Japan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967), PP. 270~271 参照
- 4) Reischauer, OP. Cit, 379~381 参照
- 5) 1965年에 越南으로 가던 美国의 B52 폭격기가 태풍관계로 오키나와에 잠깐 着陸한 바 있다. 勿論 美国이 日本政府와 事前 協議없이 行한 措置였기 때문에 이는 日議會内の 争点이 되었던 것이다. F. C. Langdon, Japan's Foreign Policy (Vancouver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1973), P. 112.

- 6) 国土統一院, 統一戰略開發 模擬實驗 基本資料, 第二輯
(1977. 10), PP. 20~22 參照
- 7) 內容全文은 上揭書, PP. 56~88 參照
- 8) F. C. Langdon, OP. Cit, PP. 116~160 參照
- 9) Theodore McNelly, Politics and Government in Japan
(New York, N. Y. : Houghton Mifflin Company), PP. 88~128 參照
- 10) Tai Sung Kim, "Impact of the Japanese Press and
Public Opinion on Japan's Security Policy Making" (第二回
韓·美政治學會 發表論文), P. 9 參照
- 11) 산케이新聞, 1976年 1月 1日字 參照
- 12) Tai sung kim, OP. Cit., P. 11 參照
- 13) 산케이新聞 OP. Cit.
- 14) 日本防衛白書. 1976 參照
- 15) Henry S. Rowen, "Japan and the Future Balance in
Asia," Orbis, Vol 21, No. 2 (Summer 1977), PP. 191~210 參照
- 16) Ibid, PP. 201~203.
- 17) 日本이 防衛力을 強化한 位置에서 美國과의 協力關係를 어
떤 形式으로 設定할 수 있는냐에 대하여 Rowen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써 推定하고 있다. (1) 美国으로부터 独立하여 美国의 日本 基地使用을 拒否하는 境遇. (2) 美国에 대하여 잠정적인 支持만을 表明하는 경우 (例로서 日本 및 日本近海의 美軍을 日本軍으로 代 置함으로써 美国이 餘他地域에 보다 積極적으로 兵力을 投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美国에 대하여 象徴的·物質的 支持를 하 는 경우 (즉, 美軍 및 同盟軍에 대한 병참지원). (4) 直接的 인 戰鬪作戰基地가 아닌 軍事基地를 美国에 提供 혹은 戰鬪作戰基 地까지도 提供. (5) 日本의 軍事力の “防衛的” 任務에 限定하여 使用. (6) 日本의 軍事力を “攻擧的” 任務에도 使用. Rowen 은 以上の 여섯가지 方案 가운데 日本이 最小限度의 協助를 提供하 면서도 戰爭抑止力을 効果적으로 行使할 수 있는 方案으로서.

(4)의 경우를 指摘하고 있다. (Henry S. Rowen, *ibid*, P. 202 参照)

18) 平和主義勢力의 活動에 關하여, Theodore, *Op. Cit*, PP.

62~69 参照

19) 金玉烈, 韓國과 美·日關係 (一潮閣, 1973), P. 126.

20) 東亞日報 1977年 3月 24日字 参照

21) 東亞日報 1977年 1月 7日字 参照

- 22) 東亞日報 1977年 1月 28日字 参照.
- 23) 東京신조호센터에서 1975年 11월에 行한 輿論調査의 結果
임. U. S. Information Agency, Research Memorandum, Janua-
ry 16, 1976. P. 1 参照
- 24) ibid, P. 7
- 25) 国土統一院. 前掲書. P. 19.
- 26) 東亞日報 1977年 5月 2日字 参照
- 27) 国土統一院. 前掲書, PP. 8~9 参照.